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1.21.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427-1912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11.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의왕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3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 | 해당지역 | | | | |
| 일정 | '25.11.21.(금) | '25.12.01.(월) | '25.12.02.(화) | '25.12.03.(수) | '25.12.04.(목) | '25.12.10.(수) | '25.12.13.(토) ~ 12.20.(토) |
| | | | | | | | '25.12.22.(월) ~ 12.25.(목)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 대상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m² 초과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 | |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 | 가입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동점 시 추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uw.skview.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총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총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 | O | | | | O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 단지 유의사항 | | | | | | | |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 | | | | | |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 | | | | | |
|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 | | |
|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3.11.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 | | | | | |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 | |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 | | |
| 일 정 | '25.12.01.(월) | '25.12.02.(화) | '25.12.03.(수) | '25.12.04.(목) | '25.12.10.(수) | '25.12.13.(토) ~ 12.20.(토) | '25.12.22.(월) ~ 12.25.(목) | |
| 장 소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5-1번지) ※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주택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 10년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공급(분양)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2.10.)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관계법령 |
|--------|---|----------------|
| 전매제한기간 |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2025.06.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분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모두 부적격 처리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 도시정비과 - 15103(2025.11.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년 11월 21일(금)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0층, 11개동 총 1,912세대[조합원 842세대, 보류지 16세대, 임대 96세대] 중 일반분양 958세대
[특별공급 508세대(기관추천 92세대, 다자녀가구 92세대, 신혼부부 217세대, 생애최초 82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30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 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 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
|----------|------------|----|-----------------|--------------|-------------------------|---------|----------|-------------------------|----------|-------------|------------|----------|-----------|----------|-----------|----------|-----|-----------------|------------------------|
| | | | | | 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5000549 | 1 | 046.9755 | 46 | 46.9755 | 17.5501 | 64.5256 | 45.6555 | 110.1811 | 21.7607 | 113 | 11 | - | 26 | 3 | 10 | 50 | 63 | 4 |
| | | 2 | 051.6612 | 51 | 51.6612 | 19.8676 | 71.5288 | 50.2095 | 121.7383 | 24.1224 | 101 | 10 | 10 | 23 | 3 | 9 | 55 | 46 | 4 |
| | | 3 | 059.7982A | 59A | 59.7982 | 23.2335 | 83.0317 | 58.1178 | 141.1495 | 28.0016 | 419 | 41 | 48 | 96 | 12 | 37 | 234 | 185 | 13 |
| | | 4 | 059.7763B | 59B | 59.7763 | 23.0444 | 82.8207 | 58.0965 | 140.9172 | 27.9305 | 153 | 15 | 19 | 35 | 4 | 13 | 86 | 67 | 4 |
| | | 5 | 074.7931A | 74A | 74.7931 | 27.7978 | 102.5909 | 72.6913 | 175.2822 | 34.5978 | 47 | 4 | 4 | 10 | 1 | 4 | 23 | 24 | 4 |
| | | 6 | 074.7807B | 74B | 74.7807 | 27.5310 | 102.3117 | 72.6793 | 174.9910 | 34.5037 | 77 | 7 | 7 | 17 | 2 | 6 | 39 | 38 | 2 |
| | | 7 | 084.7394A | 84A | 84.7394 | 30.8288 | 115.5682 | 82.3582 | 197.9264 | 38.9743 | 27 | 2 | 2 | 6 | - | 2 | 12 | 15 | 8 |
| | | 8 | 084.7665B | 84B | 84.7665 | 30.6721 | 115.4386 | 82.3846 | 197.8232 | 38.9306 | 21 | 2 | 2 | 4 | - | 1 | 9 | 12 | 5 |
| 계 | | | | | | | | | | | 958 | 92 | 92 | 217 | 25 | 82 | 508 | 450 | 44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기타 공용면적은 상품성 개선 및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내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며, 면적 산출근거 등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 견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 | | |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46.9755 | 051.6612 | 059.7982A | 059.7763B | 074.7931A | 074.7807B | 084.7394A | 084.7665B |
| 약식표기(타입) | 46 | 51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주택형 (약식) | 동/호 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종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계약 시 | 계약 후 30일 이내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 | | | | | | | | | | | | | | 입주자정일 | |
| 46 | 111동 5, 6, 7, 8호 | 4층 | 4 | 167,678,220 | 304,521,780 | - | 472,200,000 | 10,000,000 | 37,220,000 | 47,220,000 | 47,220,000 | 47,220,000 | 47,220,000 | 47,220,000 | 47,220,000 | 47,220,000 | 141,660,000 |
| | | 5~9층 | 20 | 169,808,820 | 308,391,180 | - | 478,200,000 | 10,000,000 | 37,820,000 | 47,820,000 | 47,820,000 | 47,820,000 | 47,820,000 | 47,820,000 | 47,820,000 | 47,820,000 | 143,460,000 |
| | | 10~20층 | 41 | 171,974,930 | 312,325,070 | - | 484,300,000 | 10,000,000 | 38,430,000 | 48,430,000 | 48,430,000 | 48,430,000 | 48,430,000 | 48,430,000 | 48,430,000 | 48,430,000 | 145,290,000 |
| | | 21층 이상 | 48 | 176,271,640 | 320,128,360 | - | 496,400,000 | 10,000,000 | 39,640,000 | 49,640,000 | 49,640,000 | 49,640,000 | 49,640,000 | 49,640,000 | 49,640,000 | 49,640,000 | 148,920,000 |
| 51 | 109동 1, 2호 110동 1, 2호 | 1층 | 3 | 195,411,530 | 354,888,470 | - | 550,300,000 | 10,000,000 | 45,030,000 | 55,030,000 | 55,030,000 | 55,030,000 | 55,030,000 | 55,030,000 | 55,030,000 | 55,030,000 | 165,090,000 |
| | | 2층 | 4 | 202,549,040 | 367,850,960 | - | 570,400,000 | 10,000,000 | 4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57,040,000 | 171,120,000 |
| | | 3층 | 4 | 207,307,380 | 376,492,620 | - | 583,800,000 | 10,000,000 | 48,380,000 | 58,380,000 | 58,380,000 | 58,380,000 | 58,380,000 | 58,380,000 | 58,380,000 | 58,380,000 | 175,140,000 |
| | | 4층 | 4 | 209,722,060 | 380,877,940 | - | 590,600,000 | 10,000,000 | 49,060,000 | 59,060,000 | 59,060,000 | 59,060,000 | 59,060,000 | 59,060,000 | 59,060,000 | 59,060,000 | 177,180,000 |
| | | 5~9층 | 20 | 212,101,230 | 385,198,770 | - | 597,300,000 | 10,000,000 | 4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59,730,000 | 179,190,000 |
| | | 10~20층 | 42 | 214,480,400 | 389,519,600 | - | 604,000,000 | 10,000,000 | 5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181,200,000 |
| | | 21층 이상 | 24 | 219,238,740 | 398,161,260 | - | 617,400,000 | 10,000,000 | 51,740,000 | 61,740,000 | 61,740,000 | 61,740,000 | 61,740,000 | 61,740,000 | 61,740,000 | 61,740,000 | 185,220,000 |
| 59A | 101동 3, 4, 5호 107동 3, 4호 108동 3, 4호 109동 3, 5, 6호 110동 3, 5, 6호 | 1층 | 8 | 254,500,170 | 462,199,830 | - | 716,700,000 | 10,000,000 | 6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71,670,000 | 215,010,000 |
| | | 2층 | 12 | 262,809,510 | 477,290,490 | - | 740,100,000 | 10,000,000 | 64,010,000 | 74,010,000 | 74,010,000 | 74,010,000 | 74,010,000 | 74,010,000 | 74,010,000 | 74,010,000 | 222,030,000 |
| | | 3층 | 13 | 268,313,560 | 487,286,440 | - | 755,600,000 | 10,000,000 | 65,560,000 | 75,560,000 | 75,560,000 | 75,560,000 | 75,560,000 | 75,560,000 | 75,560,000 | 75,560,000 | 226,680,000 |
| | | 4층 | 13 | 271,083,340 | 492,316,660 | - | 763,400,000 | 10,000,000 | 66,340,000 | 76,340,000 | 76,340,000 | 76,340,000 | 76,340,000 | 76,340,000 | 76,340,000 | 76,340,000 | 229,020,000 |
| | | 5~9층 | 65 | 273,853,120 | 497,346,880 | - | 771,200,000 | 10,000,000 | 67,120,000 | 77,120,000 | 77,120,000 | 77,120,000 | 77,120,000 | 77,120,000 | 77,120,000 | 77,120,000 | 231,360,000 |
| | | 10~20층 | 143 | 276,622,900 | 502,377,100 | - | 779,000,000 | 10,000,000 | 6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233,700,000 |
| | | 21층 이상 | 165 | 282,162,460 | 512,437,540 | - | 794,600,000 | 10,000,000 | 69,460,000 | 79,460,000 | 79,460,000 | 79,460,000 | 79,460,000 | 79,460,000 | 79,460,000 | 79,460,000 | 238,380,000 |
| 59B | 101동 1, 2호 109동 4호 110동 4호 | 1층 | 1 | 248,321,430 | 450,978,570 | - | 699,300,000 | 10,000,000 | 5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69,930,000 | 209,790,000 |
| | | 2층 | 4 | 256,595,260 | 466,004,740 | - | 722,600,000 | 10,000,000 | 62,260,000 | 72,260,000 | 72,260,000 | 72,260,000 | 72,260,000 | 72,260,000 | 72,260,000 | 72,260,000 | 216,780,000 |
| | | 3층 | 4 | 262,134,820 | 476,065,180 | - | 738,200,000 | 10,000,000 | 63,820,000 | 73,820,000 | 73,820,000 | 73,820,000 | 73,820,000 | 73,820,000 | 73,820,000 | 73,820,000 | 221,460,000 |
| | | 4층 | 4 | 264,904,600 | 481,095,400 | - | 746,000,000 | 10,000,000 | 6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223,800,000 |
| | | 5~9층 | 20 | 267,638,870 | 486,061,130 | - | 753,700,000 | 10,000,000 | 65,370,000 | 75,370,000 | 75,370,000 | 75,370,000 | 75,370,000 | 75,370,000 | 75,370,000 | 75,370,000 | 226,110,000 |
| | | 10~20층 | 44 | 270,408,650 | 491,091,350 | - | 761,500,000 | 10,000,000 | 66,150,000 | 76,150,000 | 76,150,000 | 76,150,000 | 76,150,000 | 76,150,000 | 76,150,000 | 76,150,000 | 228,450,000 |
| | | 21층 이상 | 76 | 275,912,700 | 501,087,300 | - | 777,000,000 | 10,000,000 | 6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233,100,000 |
| 74A | 106동 1, 2호 107동 1호 108동 1호 | 1층 | 1 | 290,507,310 | 527,592,690 | - | 818,100,000 | 10,000,000 | 71,810,000 | 81,810,000 | 81,810,000 | 81,810,000 | 81,810,000 | 81,810,000 | 81,810,000 | 81,810,000 | 245,430,000 |
| | | 2층 | 4 | 300,769,700 | 546,230,300 | - | 847,000,000 | 10,000,000 | 7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254,100,000 |
| | | 3층 | 4 | 307,623,130 | 558,676,870 | - | 866,300,000 | 10,000,000 | 76,630,000 | 86,630,000 | 86,630,000 | 86,630,000 | 86,630,000 | 86,630,000 | 86,630,000 | 86,630,000 | 259,890,000 |
| | | 4층 | 2 | 311,032,090 | 564,867,910 | - | 875,900,000 | 10,000,000 | 77,590,000 | 87,590,000 | 87,590,000 | 87,590,000 | 87,590,000 | 87,590,000 | 87,590,000 | 87,590,000 | 262,770,000 |
| | | 5~9층 | 20 | 314,441,050 | 571,058,950 | - | 885,500,000 | 10,000,000 | 78,550,000 | 88,550,000 | 88,550,000 | 88,550,000 | 88,550,000 | 88,550,000 | 88,550,000 | 88,550,000 | 265,650,000 |
| | | 10~20층 | 12 | 317,885,520 | 577,314,480 | - | 895,200,000 | 10,000,000 | 79,520,000 | 89,520,000 | 89,520,000 | 89,520,000 | 89,520,000 | 89,520,000 | 89,520,000 | 89,520,000 | 268,560,000 |
| | | 21층 이상 | 4 | 323,709,160 | 587,890,840 | - | 911,600,000 | 10,000,000 | 81,160,000 | 91,160,000 | 91,160,000 | 91,160,000 | 91,160,000 | 91,160,000 | 91,160,000 | 91,160,000 | 273,480,000 |
| 74B | 107동 2호 108동 2호 | 1층 | 1 | 282,908,170 | 513,791,830 | - | 796,700,000 | 10,000,000 | 69,670,000 | 79,670,000 | 79,670,000 | 79,670,000 | 79,670,000 | 79,670,000 | 79,670,000 | 79,670,000 | 239,010,000 |
| | | 2층 | 2 | 293,135,050 | 532,364,950 | - | 825,500,000 | 10,000,000 | 72,550,000 | 82,550,000 | 82,550,000 | 82,550,000 | 82,550,000 | 82,550,000 | 82,550,000 | 82,550,000 | 247,650,000 |
| | | 3층 | 2 | 299,952,970 | 544,747,030 | - | 844,700,000 | 10,000,000 | 74,470,000 | 84,470,000 | 84,470,000 | 84,470,000 | 84,470,000 | 84,470,000 | 84,470,000 | 84,470,000 | 253,410,000 |
| | | 4층 | 2 | 303,361,930 | 550,938,070 | - | 854,300,000 | 10,000,000 | 75,430,000 | 85,430,000 | 85,430,000 | 85,430,000 | 85,430,000 | 85,430,000 | 85,430,000 | 85,430,000 | 256,290,000 |
| | | 5~9층 | 10 | 306,770,890 | 557,129,110 | - | 863,900,000 | 10,000,000 | 76,390,000 | 86,390,000 | 86,390,000 | 86,390,000 | 86,390,000 | 86,390,000 | 86,390,000 | 86,390,000 | 259,170,000 |
| | | 10~20층 | 22 | 310,179,850 | 563,320,150 | - | 873,500,000 | 10,000,000 | 77,350,000 | 87,350,000 | 87,350,000 | 87,350,000 | 87,350,000 | 87,350,000 | 87,350,000 | 87,350,000 | 262,050,000 |
| | | 21층 이상 | 38 | 316,997,770 | 575,702,230 | - | 892,700,000 | 10,000,000 | 79,270,000 | 89,270,000 | 89,270,000 | 89,270,000 | 89,270,000 | 89,270,000 | 89,270,000 | 89,270,000 | 267,810,000 |
| 84A | 103동 1, 3, 4호 104동 1, 3, 4호 105동 1, 3, 4호 106동 3, 5호 | 1층 | 6 | 334,965,830 | 608,334,170 | - | 943,300,000 | 10,000,000 | 84,330,000 | 94,330,000 | 94,330,000 | 94,330,000 | 94,330,000 | 94,330,000 | 94,330,000 | 94,330,000 | 282,990,000 |
| | | 2층 | 10 | 346,542,090 | 629,357,910 | - | | | | | | | | | | | |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선택 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46㎡, 59㎡A,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양식표기) | | | 46 | 51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2 | 2 | 10 | 3 | 1 | 1 | 1 | 1 | 21 |
| | | 서울특별시 | 1 | 1 | 5 | 2 | - | 1 | 1 | 1 | 12 |
| | | 인천광역시 | 1 | 1 | 3 | 1 | - | 1 | - | - | 7 |
| | 국가유공자 | | 2 | 2 | 6 | 2 | 1 | 1 | - | - | 14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1 | 4 | 2 | - | 1 | - | - | 9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2 | 1 | 5 | 2 | 1 | 1 | - | - | 12 |
| | 중소기업 근로자 | | 2 | 2 | 8 | 3 | 1 | 1 | - | - | 17 |
| | 소계 | | 11 | 10 | 41 | 15 | 4 | 7 | 2 | 2 | 9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 - | 5 | 24 | 10 | 2 | 4 | 1 | 1 | 47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 5 | 24 | 9 | 2 | 3 | 1 | 1 | 4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26 | 23 | 96 | 35 | 10 | 17 | 6 | 4 | 21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3 | 3 | 12 | 4 | 1 | 2 | - | - | 25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10 | 9 | 37 | 13 | 4 | 6 | 2 | 1 | 82 |
| 합 계 | | | 50 | 55 | 234 | 86 | 23 | 39 | 12 | 9 | 508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혼인특례) | 신혼부부 |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p>■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를 입양한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div>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head><tbody><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body></table> | | | 구분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th></tr></thead><tbody><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body></table>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내용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함. -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②배점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p> <p>(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 | | | | | | | |
|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p> | |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순위 | 내용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11.2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원~ 10,087,437원 | 8,578,089원~ 12,009,323원 | 9,031,049원~ 12,643,467원 | 9,733,087원~ 13,626,320원 | 10,435,125원~ 14,609,17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646,375원~ 11,528,499원 | 10,293,707원~ 13,724,941원 | 10,837,259원~ 14,449,677원 | 11,679,704원~ 15,572,938원 | 12,522,150원~ 16,696,198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비고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점수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p>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우선공급(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4단계 | 일반공급(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5.11.2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366,906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13,565,661원 | ~14,478,311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366,907원~ 11,528,499원 | 11,151,515원~ 13,724,941원 | 11,740,363원~ 14,449,677원 | 12,653,013원~ 15,572,938원 | 13,565,662원~ 16,696,198원 | 14,478,312원~ 17,819,459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조(동일)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왕시 및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70%</td> <td>30%</td> </tr> </tbody> </table>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 | | | | | | | | |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 | | | | | | | | | | | | | | | | |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당첨자 선정방법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순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장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2025.12.0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5-1번지 ☎ 031) 427 - 1912 | • 일시 : 2025.12.10.(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 일반 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025.12.02.(화) 09:00~17:30 |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 | | 기타지역 [의왕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 2025.12.03.(수) 09:00~17:30 |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 2순위 | | 2025.12.04.(목) 09:00~17:30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 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p>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td> <td style="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td></tr> </tbody> </table>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조회기간 : 2025.12.10.(수) ~ 2025.12.19.(금) (10일간) 조회기간(10일)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PC · 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일시 : 2025.12.1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p>*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구 분 |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 장 소 |
|----------------------------------|--|---|
|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5.12.13.(토) ~ 12.20.(토) 8일간 (10:00 ~ 17:00) |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5-1번지)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의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 견본주택(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5-1번지)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1> 자격확인 제출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 | | |
| | ○ | 복무확인서 | |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배우자 | | |
| | ○ | 해외 근무(단신부임) 증명서류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 | 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19세이상 세대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혼인 신고일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 소득증빙서류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기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riro.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 |
| | ○ | 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세이상 세대원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 | ○ | 소득증빙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혼인 신고일 확인)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 일반 공급유형으로 청약신청한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임신진단서 외 불가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기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건본주택 비차)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일반공급 (가점제) | <input type="radi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배우자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input type="radi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input type="radi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준위확인서 |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input type="radio"/> | 당첨사실 확인서 |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망 > APT당첨사실 조회 |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input type="radi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input type="radi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
| | <input type="radi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부적격 의심세대 | <input type="radi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input type="radi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input type="radi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input type="radio"/>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해당 주택 | 해당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
| | <input type="radio"/> | 당첨사실 소명 서류 | 해당자 |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input type="radio"/> | 단신부임 입증 서류 | 본인 | 배우자 및 세대원 |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피켓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
| | <input type="radi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 |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input type="radi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 해당자 | 직계존속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대리인 추가서류 | <input type="radi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대리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
| | <input type="radio"/> | 신분증 | 대리인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1.]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전년도 전직(이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소득금액증명원 |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 ②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②, ③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 제출 불가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가입인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주민센터 |
| 일용근로소득자 | |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① 세무서/해당 직장 |
| 무직자 (만19세이상)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해당자격 | 소득증빙 제출서류 |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소유증빙 |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조회기준 : 주택, 건축물, 토지 / 전국자치단체 기준 | | |
| | 자산가액 증빙 |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 ① 행정복지센터 ②, ③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 해당자 |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종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가,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 (www.eum.go.kr)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

■ <표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 2025.12.22(월) ~ 12.25.(목) (4일간, 10:00~17:00) |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5-1번지)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 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input type="radio"/>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접수 장소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인감도장 | | |
| | <input type="radio"/> | | 인감증명서 | | |
| | <input type="radio"/> | | 계약금 입금증 | | |
| | <input type="radio"/> | | 부동산 거래신고서 | | |
| | <input type="radio"/> | | 수입인지(인지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가 50%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및 수입인지 배부 예정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으로 납부하여야 함 수입인지 구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접수 장소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 | |
| | <input type="radio"/>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input type="radio"/>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input type="radio"/> | | 위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 대리 계약 시 | <input type="radi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 | <input type="radio"/> | | 신분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 1차 계약금(최초 계약 시) | 농협은행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 | |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가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기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 해야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일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일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의왕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분양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 인지세 납부 방법 | | | | | |
|-----------|---|-------------------|------------------|------------------|---------|
|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 | | | |
| 납부기한 |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 | |
| 납부방법 |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 | | | |
| 인터넷 |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 | | |
| 기재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 |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 | |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기간 | |
| 51 | 15,000,000 | 1,500,000 | 13,500,000 | |
| 59A | 16,000,000 | 1,600,000 | 14,400,000 | |
| 59B | 16,000,000 | 1,600,000 | 14,400,000 | |
| 74A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 74B | 17,000,000 | 1,700,000 | 15,300,000 | |
| 84A | 20,000,000 | 2,000,000 | 18,000,000 | |
| 84B | 19,000,000 | 1,900,000 | 17,100,000 |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최초 계약 시) | 추후 안내 예정 | |
| | 잔금 | | |

※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납부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잔금)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하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및 슬리브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미선택 시 공간 특성상 유상옵션(추가옵션)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6 타입의 경우에는 확장불가 타입으로 발코니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유상옵션 선택 가능함)
- 발코니 확장 시 외부 창호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외부 창호 및 하드웨어는 고급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 선택 | | 설치위치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시(10%) | | 잔금(90%) | |
|-----|----|----|-----------------------------|------|-----------|----------|-----|-----------|-----|
| | | | | | | 계약시 | 입주시 | 계약시 | 입주시 |
| 46 | 1안 | 2대 | 거실+침실1 | LG전자 | 4,000,000 | 400,000 | | 3,60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200,000 | 520,000 | | 4,680,000 | |
| 51 | 1안 | 2대 | 거실+침실1 | LG전자 | 4,100,000 | 410,000 | | 3,69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300,000 | 530,000 | | 4,770,000 | |
| 59A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600,000 | 660,000 | | 5,940,000 | |
| | 1안 | 2대 | 거실+침실1 | | 4,100,000 | 410,000 | | 3,69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400,000 | 540,000 | | 4,860,000 | |
| 59B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600,000 | 660,000 | | 5,940,000 | |
| | 1안 | 2대 | 거실+침실1 | | 4,000,000 | 400,000 | | 3,60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400,000 | 540,000 | | 4,860,000 | |
| 74A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700,000 | 670,000 | | 6,030,000 | |
| | 1안 | 2대 | 거실+침실1 | | 4,200,000 | 420,000 | | 3,78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400,000 | 540,000 | | 4,860,000 | |
|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700,000 | 670,000 | | 6,030,000 | |
| | 4안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 8,200,000 | 820,000 | | 7,380,000 | |
| 74B | 1안 | 2대 | 거실+침실1 | LG전자 | 4,100,000 | 410,000 | | 3,69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500,000 | 550,000 | | 4,950,000 | |
|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800,000 | 680,000 | | 6,120,000 | |
| 84A | 1안 | 2대 | 거실+침실1 | | 4,200,000 | 420,000 | | 3,78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700,000 | 570,000 | | 5,130,000 | |
|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800,000 | 680,000 | | 6,120,000 | |
| | 4안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 8,500,000 | 850,000 | | 7,650,000 | |
| | 5안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히든주방 선택시] | | 8,600,000 | 860,000 | | 7,740,000 | |
| 84B | 1안 | 2대 | 거실+침실1 | LG전자 | 4,200,000 | 420,000 | | 3,780,000 | |
| | 2안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 5,700,000 | 570,000 | | 5,130,000 | |
| | 3안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800,000 | 680,000 | | 6,120,000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84A TYPE의 경우 히든주방 선택 시에만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는 5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천장 냉매배관으로 시공,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무선)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별도의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제품이며, 홈네트워크에 표시되는 기능은 시스템에어컨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형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와이드 주방 | 'ㄷ'형 주방가구 + 알파룸 | 'ㄷ'형 주방가구 + 알파룸 + 주방팬트리 | 74A | 1,800,000 | |
| | | | 84A | 2,200,000 | |
| 히든 주방 | 'ㄷ'형 주방가구 + 알파룸 | '-'형 주방가구(아일랜드 주방가구 포함) + 복도팬트리 | 84A | 3,400,000 | |

- 평면선택형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평면선택형 유상옵션 선택 및 해지는 불가합니다.
- 와이드 주방 선택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기본형과 동일한 'ㄷ'형 주방가구가 제공되며, 84A 히든주방 선택 시에는 쿡탑, 후드의 위치 조정 및 주방가구 형태가 변경 제공되오니 필히 확인바랍니다.
- 평면선택형에 따라 전기, 설비 관련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됩니다.
- 평면선택형에 따라 추가 유상옵션 선택이 상이하오니 관련 내용 숙지 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 고급화

① 중문 / 발코니 외창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중문 | - | 3연동 (PVC+AL 탑입) | 46 | 1,800,000 | |
| | | | 51 | 2,000,000 | |
| | | | 59A | 2,100,000 | |
| | | | 59B | 2,100,000 | |
| | | | 74A | 2,100,000 | |
| | | | 74B | 2,100,000 | |
| | | | 84A | 2,100,000 | |
| | | | 84B | 2,100,000 | |
| | | | | | |
| 발코니 외창 | 일반형 단창 | 고급형 단창 | 46 | 1,850,000 | |

- 현관 중문은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으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타입별 사이즈가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상선택에 따라 신발장 or 복도장(46, 59A)의 형태, 규격,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가구와 이웃하여 벽체가 조성됩니다.

② 바닥재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바닥재 | 강마루 (W:115mm) | 와이드 강마루 (W:165mm) | 46 | 150,000 | |
| | | | 51 | 220,000 | |
| | | | 59A | 240,000 | |
| | | | 59B | 240,000 | |
| | | | 74A | 300,000 | |
| | | | 74B | 300,000 | |
| | | | 84A | 350,000 | |
| | | | 84B | 350,000 | |
| | | | | | |

- 바닥재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바닥재 고급화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으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강마루는 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자재 수급 및 단종 시 유사 패턴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강마루의 패턴지는 동일, 규격은 상이하며, 본 공사시 강마루의 규격은 생산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③ 아트월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아트월 고급화 | 거실) 아시아산아트월타일(600X1200)+ 벽지 복도) 벽지 | 거실) 유럽산아트월타일(600x1200) + 쉬트판넬 복도) 쉬트판넬 | 46 | 1,700,000 | |
| | | | 51 | 2,400,000 | |
| | | | 59A | 2,300,000 | |
| | | | 59B | 2,700,000 | |
| | | | 74A | 3,0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거실) 유럽산아트월타일(600x1200) + 쉬트판넬 복도) 유럽산아트월타일(600x1200) + 쉬트판넬 | 74B | 3,0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84A | 2,9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84B | 2,400,000 | 히든주방 선택 시 |
| | | | 84B | 3,200,000 | |

- 아트월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아트월 고급화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으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아트월 고급화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및 나누기는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아트월 타일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메지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 상판/벽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주방 상판/벽 고급화 | 인조대리석(MMA) 주방 상판 + 도기질타일(300x600) 주방벽 |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 주방벽 | 46 | 2,800,000 | |
| | | | 51 | 3,300,000 | |
| | | | 59A | 3,000,000 | |
| | | | 59B | 3,000,000 | |
| | | | 74A | 3,3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74B | 3,300,000 | |
| | | | 84A | 3,7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84A | 4,500,000 | 히든주방 선택 시 |
| | | | 84B | 3,500,000 | |

- 주방 상판/벽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인조석 및 엔지니어드 스톤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부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 될수 있습니다.
- 74A, 84A 평면선택형 중 와이드 주방 선택 시 주방 상판/벽 고급화 적용 범위는 기본 주방과 동일합니다.
- 84A 평면선택형 중 히든주방 선택 시 주방 상판/벽 고급화 적용 범위가 기본 주방과 상이하오니 계약전 확인바랍니다.

⑤ 욕실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욕실 고급화 | 국산타일 (바닥:자기질 300x300 / 벽:도기질 300x600) | 아시아산 타일 (바닥:포세린타일 300x300 / 벽:포세린타일 600x600) | 46 / 51 | 450,000 | |
| | | 아시아산타일 (바닥:포세린타일 300x300 / 벽:포세린타일 600x600) | 59A / 59B | 1,100,000 | |
| | 국산타일 (바닥:자기질 300x300 / 벽:도기질 300x600) 유리 샤워부스 (욕실2) | 파티션 샤워부스(욕실2) | 74A / 74B | 1,100,000 | |
| | | 아시아산타일 (바닥:포세린타일 300x300 / 벽:포세린타일 600x600) | 84A | 4,500,000 | |
| | | 파티션 샤워부스(욕실2) / 세미카운터탑세면대(욕실2) | 84B | 4,500,000 | |

- 욕실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욕실 고급화는 욕실1, 욕실2 (46, 51 욕실1)에 적용되며 계약자가 임으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욕실 고급화 기본, 유상으로 제공되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 및 나누기는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84A, 84B 탑입은 욕실 고급화 선택 시 욕실2의 세면기, 휴지걸이 사양 및 ABS 도어, 양변기, 악세서리, 비상콜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며, 제공되는 수건걸이의 길이가 짧게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 84A, 84B 탑입은 욕실 고급화 선택 시 세면기의 배수 소음을 고려하여 카운터탑 하부에 조작이 추가 시공됩니다.
- 84A, 84B 탑입은 욕실 고급화 선택 시 욕실2 ABS 도어 위치 변경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의 깊이 및 시스템 선반의 길이는 줄어들며, 파우더장 옆 틀장이 추가 제공됩니다.

(6) 조명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조명 고급화 | 주방) 매립등 침실1, 2) 침실직부등 | 주방) 매립등 + 우물천정 간접등 침실1, 2) 직부등(w/디밍&색온도) 거실,침실1, 2) 커튼박스직부등 욕실1) 욕실하부장센서등 | 46 | 1,300,000 | |
| | | 거실) 직부등 (w/디밍&색온도) + 우물천정 간접등 침실1, 2, 3) 직부등(w/디밍&색온도) | 51 | 1,600,000 | |
| | | 복도) 간접등 거실,침실1, 2, 3) 커튼박스직부등 | 59A | 1,700,000 | |
| | | 욕실1) 욕실하부장센서등 (51) | 59B | 2,300,000 | |
| | 거실) 직부등 (w/디밍&색온도) 침실1, 2, 3) 침실직부등 | 욕실1,2) 욕실하부장센서등 | 74A | 3,2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주방) 우물천정 간접등 (74A, 84A) | 74B | 2,600,000 | |
| | | 욕실1,2) 욕실하부장센서등 | 84A | 3,4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주방) 우물천정 간접등 (74A, 84A) | 84B | 3,300,000 | 히든주방 선택 시 |
| | | | 84B | 2,800,000 | |

- 조명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조명 고급화 설치 위치는 타입별 상이하며, 계약자가 임으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조명 고급화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구의 탑입, 기능, 수량, 위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당 실의 스위치 탑입, 기능, 회로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74A, 84A 평면선택형 중 와이드 주방 선택 시 조명 고급화 적용 범위는 기본 주방과 동일합니다.
- 74A, 84A에 제공되는 평면선택형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구의 탑입, 기능, 수량, 위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당 실의 스위치 탑입, 기능, 회로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는 평형별로 사이즈가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 고급화 선택 시, 주방 우물천정 간접등은 평면구조 및 주방 규모를 고려하여 74A, 84A만 제공되며, 74B, 84B타입은 거실~주방 통합형으로 제공됩니다.
- 조명 고급화 선택 시,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경우, 등기구는 욕실장 하부에 설치되며, 등기구 동작을 위한 센서는 욕실 천장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 조명 고급화 선택 시, 욕실장 하부 센서조명의 설치방식 및 하부 탑공 수량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고급화 선택 시,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되는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명 고급화 선택 시, 안방, 침실조명에는 밝기 조절(디밍) 기능과 색온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스위치의 기능/모양이 달라집니다. (옵션 미선택 시, 조명 On/Off 기능만 제공됨)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욕실장 하부에는 조명이 설치되지 않으며, 등기구 동작을 위한 센서 또한 욕실 천장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매입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침실1,2,3 스위치는 일반네트워크스위치가 제공되며, 선택시에는 터치식 네트워크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7) 양변기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양변기 고급화 | 욕실1) 투피스양변기 | 욕실1) 비데일체형양변기 | 46 / 51 | 800,000 | |
| | 욕실1) 투피스양변기 |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1,400,000 | |
| | 욕실2) 원피스양변기+비데 | 욕실1, 2) 비데일체형양변기 | | | |

- 양변기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양변기 고급화는 욕실1, 욕실2 (46, 51 욕실1) 적용되며 계약자가 임으로 위치를 지정 하실 수는 없으니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양변기 고급화 선택 시 비데일체형 양변기 리모컨은 욕실 벽면에 시공되지 않으며, 입주 시 지급품목으로 입주자께서 수령 후 직접 부착하셔야 됩니다.

■ 가구 고급화

① 주방가구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주방가구 고급화 | PET 마감 상하부장 (일반싱크대 + 국산 일반형 수전 + 국산 경첩) | PET 마감 상하부장 (일반싱크대 + 국산 일반형 수전 + 유럽산 경첩 + 상부장하부작업등) | 46 | 700,000 | |
| | | PET 마감 상하부장 + 플랩유리상부장 (주방창 위 상부장) (사각싱크대 + 국산 고급형 수전 + 유럽산 경첩 + 상부장하부작업등) | 51 | 1,600,000 | |
| | | | 59A | 1,700,000 | |
| | | | 59B | 1,700,000 | |
| | | | 74A | 2,2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74B | 2,200,000 | |
| | | | 84A | 2,3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 2,000,000 | 히든주방 선택 시 |
| | | | 84B | 1,800,000 | |

- 주방가구 고급화는 밸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고급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상부장의 높이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상부장의 높이와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46타입 제외)
- 74A, 84A 평면선택형 중 와이드 주방 선택 시 주방가구 고급화 적용 범위는 기본 주방과 동일합니다.
- 84A 평면 선택형 중 히든주방 선택 시 주방가구 고급화 적용 범위가 기본 주방과 상이하오니 계약전 확인바랍니다.

② 드레스룸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ドレス룸 고급화 | 포스트 타입 시스템 선반 | 벽판넬 시스템 선반 | 51 | 1,200,000 | |
| | | | 59A | 450,000 | |
| | | | 59B | 1,200,000 | |
| | | | 74A | 1,800,000 | |
| | | | 74B | 1,800,000 | |
| | | | 84A | 2,400,000 | |
| | | | | 2,200,000 | 욕실 고급화 선택 시 |
| | | | 84B | 2,400,000 | |
| | | | | 2,200,000 | 욕실 고급화 선택 시 |

- 드레스룸 고급화는 밸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 시 제공되는 서랍은 드레스룸 규모에 따라 3단(51, 59B, 74B, 84B), 4단(74A, 84A)이 제공되며, 일부타입(59A)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시 제공되는 선반 조명용 스위치가 추가 제공되며, 시스템 선반은 벽판넬 고정 및 조명 적용으로 선반 이동이 불가합니다
- 84A, 84B 타입은 드레스룸 고급화, 욕실 고급화 유상옵션 동시 선택 시 드레스룸의 깊이 및 제공되는 시스템 선반의 길이는 줄어들며, 파우더장 옆 틀장이 추가 제공됩니다.

③ 히든가전캐비넷 / 불박이장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히든가전캐비넷 | - | 포켓도어시스템 수납장 | 59A | 4,800,000 | |
| | | | 59B | 4,800,000 | |
| | | | 74A | 4,8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74B | 4,800,000 | |
| | | | 84A | 4,800,000 | 기본형, 와이드주방 선택 시 |
| | | | | 5,200,000 | 히든주방선택 시 |
| | | | 84B | 4,800,000 | |
| 불박이장 | - | 침실 2 | 51 / 59A / 59B / 74A / 74B | 1,100,000 | |
| | | | 84A / 84B | 1,500,000 | |

- 하든가전캐비넷 / 불박이장은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하든가전캐비넷 유상옵션은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유상옵션 선택 시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은 제공되지 않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바라며, 하든가전캐비넷 유상옵션 선택 시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은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단 84A에 제공되는 평면선택형 중 하든주방선택 시 하든가전캐비넷이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하든가전캐비넷 유상옵션과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동시에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하든가전캐비넷에 적용된 포켓도어 특성상 앞으로 도출되어 보유 또는 구매예정인 냉장고 사양에 따라 사용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하든가전캐비넷에 적용된 조명용 스위치의 위치가 이동선반 간섭을 고려하여 후면 하단에 설치되어 사용상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타입별 제공되는 침실 규모에 따라 길이는 타입별 상이하며, 파우더가 포함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 가전기기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유상 | 평형 | 금액 | 비고 |
|------------------|---|-----------------------------------|-----------|--------------|
| 키친핏 냉장고 | 비스포크 키친핏 4도어 냉장고 (삼성 / RM70F63R2Z) | 46, 51 | 2,500,000 | 하든가전캐비넷 선택 시 |
| | | 59A, 59B, 74A, 74B, 84A, 84B | | |
| 키친핏 냉장고/김치냉장고 | 비스포크 키친핏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틀장 (삼성/RM70F63R2Z + RQ33DB74E1AP)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4,800,000 | |
| 식기세척기 |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 DW80F71Y1SEW)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900,000 | |
| 인덕션 | 빌트인 3구 인덕션 (삼성 / NZ63DG403EFK) | 전타입 | 800,000 | |
| 전기오븐 | 빌트인 전기오븐 (쿠쿠 / CMOS-A4410B) | 전타입 | 400,000 | |

- 가전기는 발코니 확장(46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가전기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단종에 따른 제품 사양 변경 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단종에 따른 제품 사양 변경 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1타입은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틀장의 사이즈가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 키친핏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도어 마감 및 색상은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 키친핏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이 포함된 틀장이 제공되며, 제공되는 틀장의 규격은 타입별 상이합니다.
- 키친핏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하든가전캐비넷 유상옵션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단 84A에 제공되는 평면선택형 중 하든주방선택 시 하든가전캐비넷이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하든가전캐비넷 유상옵션과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동시에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키친핏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 후면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키친핏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일반 프리스탠딩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을 기본제공하나, 보유 또는 신규 구매 제품의 크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하거나, 가구보다 도출되어 설치 될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주방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쿡탑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가스밸브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인덕션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지를 설치할 경우 "을"이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욕실환풍기 고급화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기본 | 유상 | 타입 | 금액 | 비고 |
|-----------|----------------|------------------|-----------------------------------|---------|----|
| 욕실환풍기 고급화 | 욕실1) 욕실 배기팬 | 욕실1) 욕실 복합환풍기 | 46 / 51 | 350,000 | |
| | 욕실1, 2) 욕실 배기팬 | 욕실1, 2) 욕실 복합환풍기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700,000 | |

- 욕실환풍기 고급화는 발코니 확장(46 제외) 계약 시 선택 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합니다.
- 욕실환풍기 고급화 옵션계약은 욕실1, 욕실2에 설치 되며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욕실 고급화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 위치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리모컨(무선)은 장비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미선택 시 기본형 욕실 배기팬이 설치 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일정

| 계약금(10%) | 잔금(90%) |
|--------------------------|---------|
|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계약 시(추후 별도고지) | 입주지정기간 |

■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 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금액 | 계약금(최초 계약 시) 잔금 | 추후 안내 예정 | |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납부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일부 및 전체 품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특정 품목을 선택해야만 추가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당사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해서 계약자는 시공사에 민원 제기 및 하자보수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9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인 "의왕시청역 SK VIEW IPARK(예정)"는 향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예정)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관할 인허가청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예정)의 역명인 의왕시청역(105정거장, 가칭)은 추후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기초로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명칭인 "의왕시청역 SK VIEW I PARK"의 명칭 또한 추후 관할 인허가청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사업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업으로서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주체,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역사 명칭, 위치 등 포함)이 변경되거나 개통이 지연될 수 있으며(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0호 및 제2024-404호, 의왕시 공식 홈페이지, 향후 발표되는 의왕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등의 공식 발표/보도자료 등을 참조 바람),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인허가 이행여부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준공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동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향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당 현장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23.11.17. 한국전파 진흥협회에서 확인하여, 101, 104, 107, 108, 110, 111 동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106, 108, 109 동 1층 조경에 이동통신설비 화단용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및 시공,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을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일반사항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내에 시공되는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부지이며, 균린생활시설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구 등으로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고시 시점에 면적 확인 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증감되는 면적이 m^2 기준 소수점 이하의 경우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자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등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일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난간 및 옥상 난간의 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균린생활시설 등) 지붕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로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흥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 제품품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설비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실외기실,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실외기실, 구역계 내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출입구(주출입구,부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 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입층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지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평면 계획 및 시설 구성은 등등 이상의 수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냉난방설비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고, 창이 설치되지 않는 세대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주소 체계도 향후 관할 관청의 기준에 따라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고 마을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용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변화에 따른 경사로 및 조경석쌓기, 용벽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용벽 패턴 및 색채,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역 내 공원 및 기반시설, 도로 등의 계획은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특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에는 마감재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와 고천초등학교(이전 예정위치)를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6m)는 인접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상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인 출입 가능)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 시공 시 일부 인허가 도서의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 개선과 구조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는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기인가조서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중심을 반경으로 약 1km 이내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일부 동에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설비 등 시설물 인한 소음 및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 111동 하부에 균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설비 등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 옥외 조경시설,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냉난방 실외기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균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보관함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택배보관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체룸, 주민공동시설 보일러실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급배기구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에 따른 사생활권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필로티 및 측벽, 전면에는 제연체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 위치, 지하주차장 계단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도에 개보수와 도로시설물 및 지하매설을 설치가 상시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는 해당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 균린생활시설은 상가 입주자가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층 계단실 진입 개구부에 바닥높이 차이로 인한 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의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상부(최하층)세대의 경우 유킬배관은 층상배관으로 설치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훈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육실 및 주방환기는 직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환기캡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와 E/V 기계실에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인접 동(104동, 105동 사이)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저층부 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 구간 제외될 수 있음)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 그릴 칼라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외부조명 및 흡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물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 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난간재질, 입면장식 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아파트 중간층에(동별위치 상이) 벽부형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 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합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의 실외기실 전동그릴 사양은 상이 할 수 있으며, 설치 제품에 따라 주동 외관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형태는 인허가 조건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개선 방향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1동(전용 46m² 타입) 공용홀 복도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처리를 위한 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111동(전용 46m² 타입) 하부 균린생활시설은 주변 현황 및 레벨 측량값에 따라 매장레벨 및 출입동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1동(전용 46m² 타입)의 조합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의 외부 창호사양은 상이 하며, 일반분양 세대의 창호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주동 외관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11동(전용 46㎡ 타입) 주동 출입동선은 균린생활시설 변경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 도로 형태는 주변 현황 및 레벨 측량값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충탑공원 현황 레벨에 따라 주변 용벽 상단 레벨 및 용벽 설치 개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는 인허가조건 및 개선 방향에 따라 계획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인접하여, 이로 인한 단지 및 인접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일조/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시공자,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연단자 및 용벽구간 시공으로 저층부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로계획은 향후 정비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선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수대로에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신설 예정으로 향후 철도관련 공사, 열차운행 등으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덕원~동탄복선전철 개발계획, 개통 시기 및 역사 위치 등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인허가 및 변경예정 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주민공동시설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지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가상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지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견본주택 내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내·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내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디자인, 마감재의 컬러 및 나누기도, 패턴, 규격 등이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조경

- 단지 조경 및 식재계획, 조경시설물(놀이, 운동, 휴게, 수경시설)계획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폭, 조경선형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물계획의 재료, 형태, 색채, 포장문양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추가 계획예정이며, 청소, 점검 등 관리 미흡으로 녹조, 백화현상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미관저해 및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 경비실은 총 2개소 설치 예정이며, 일부 보행자 출입구의 경우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 추가 설치(이동식 또는 고정식)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 henる, 배기탑, 발전기실 연도, 제연헨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합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보관소 11개소,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보관소 1개소가 설치될 예정(개소, 위치 및 규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각 동 지하1층에 제연헨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됩니다.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당 단지에는 총 2개소의 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있으며 출입구와 인접한 등의 경우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시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3층~지하1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지하3층 (지하1층도 통행로 높이 2.7m미만인 구간 104동, 105동 서측으로 일부 존재함) 2.3m이며, 지하주차장 지하2, 3층 내 택배차량은 통행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간 높이는 2.3m이나, 일부 구간에 한해서 2.1m인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09개(급속 13개, 완속 48개, 콘센트 148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결로수를 위한 공간이며 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훌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릅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펜)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훌,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세대별 창고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동별 배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고,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 기준으로 각 동의 지하1층 동출입구 주변에 설치예정이며, 택배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 기준이며, 동별·코아별로 무인택배함에 접근성이 상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101동 1층, 주민공동시설: 102동, 103동 지하1층, 경로당: 103동 1층, 어린이집: 108동 1층,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게스트 하우스: 108동 109동 사이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 등에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의 육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계획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 111동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점포에서 조망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 |
|------|--|
| 101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에 단지 차량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단지 주출입구 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어린이통학차량 정차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제연 хр愠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동측 커뮤니티가든으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에 인접하여 주차장 헨룸 D/A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북서측, 남서측 도로로 인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102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103동 사이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잔디광장 및 주민운동시설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역사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 빗물이용시설, 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북서측, 남서측 도로로 인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3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04동 사이 단지 부출입구 및 공공보행통로(통학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잔디광장 및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D/A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 경로당설치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북측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4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04동 사이 단지 부출입구 및 공공보행통로(통학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105동 사이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매연 등의 환경영향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에 인접하여 빗물이용시설, 기계실, D/A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단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어린이통학차량 정차공간 및 필로티 하부 맘스테이션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에 인접하여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서측의 도로로 인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 |
|------|--|
| 105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4~105동 사이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매연 등의 환경영향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지하에 인접하여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빗물이용시설, 기계실, D/A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측에 주민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전기 발전기실, 제연헬륨DA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북서측, 북동측의 도로에 따른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6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측으로 통학로가 조성되어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펌프실 D/A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인근 지상1층 조경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107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108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측에 유아놀이터와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남동측에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와 동 인근 지상1층 조경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109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동측에 유아놀이터와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인근 지상1층 조경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110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남동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균생 주차장이 위치하고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111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저층부 세대의 빛, 소음,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있어, 소음 및 냄새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 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남서측의 도로, 동측의 종교부지에 따라 빛, 소음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계획안 조정 시 주동 출입 외부 동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확인을 거쳐, 해당 동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으로서 집단에너지 의무사용 대상이며, 동 건물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의 인조대리석 또는 엔지니어드스톤의 줄눈이 있으며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침실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옵션 평면 선택 등의 사유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평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미선택 시 전 타입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 공사 시 장비 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이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차단기 및 가스배관은 주방가구 고급화 옵션 선택에 따라 노출 또는 매립될 수 있습니다. (인던션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차단기 및 가스배관 적용)
- 본 공사 시 마루 자재 및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시공은 가로(수평) 및 세로(수직)의 무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타일 자재의 개별 고유무늬로 연결이 불가합니다.
- 현관바닥 및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젠다이,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 시 확장 세대와 상이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접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훔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 벽체(침실)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외부에 설치된 유리난간 파손 우려로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육상 배수를 위해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에 우수선풍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의거 사용승인 후 개별세대 발코니 확장공사 시 해당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 및 해당 지자체에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득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외부창호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 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선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안방 발코니, 대피공간의 경우 비난방공간입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1~3층) 세탁실 발코니 입상배관이 두개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저층용 배관 및 통기관)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소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거실 아트월 벽면에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욕실펜이 적용되며, 옵션 선택으로 복합환풍기가 설치될 경우 기본 욕실펜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주방가구 규모에 따라 유무상으로 제공되는 씽크대 크기, 주방하부장의 코너부분의 수납형태 및 도어 설치 위치 (51,59A 거실방향) 등이 상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46, 51타입의 냉장고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보유 또는 구매예정인 냉장고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필히 규격을 확인바랍니다.
- 일부타입의 경우 주방(식탁공간)이 협소하여 식탁설치에 제약이 있거나, 식탁이 복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46타입의 발코니 상부에는 세탁배수관, 가스관등이 설치됨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천정이 조성되어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케이싱폭은 변경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현관 디딤석의 나누기 위치는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작업공간 또는 아일랜드주방에 제공되는(46제외) 콘센트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하부장에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경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미사용 시 해당 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해당 없음)
- 인조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은 본 공사 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 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옆세대(발코니 확장)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의 면적의 감소 및 일부 벽체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스프링클러 배관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 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은 설치상의 사유로 인하여 장의 코너 부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 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평면 형태에 따라 현관 거울사이즈 및 가구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9~59m² 타입의 안방 분합창 높이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의해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거실 우물천장 천장고는 2,400mm입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나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저층부 세대 1,2층의 창호 외부에는 방범용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주택형별로 제공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 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세대 외의 타입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합니다.
- 도면과 모델하우스(견본주택)가 상이할 경우 인테리어사항은 모델하우스(견본주택)가 우선 적용됩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침실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및 비확장,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합니다.
-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됩니다.(홈네트워크 건물 AA등급 수준임)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 정보통신공사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공동주택) 1등급 수준으로 시공되며, 홈네트워크 공사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AA등급 수준으로 시공됩니다.
- Homeniq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omeniq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Homeniq와 연동된 IoT 가전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Homeniq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기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omeniq 서비스사의 운영 현황에 따라 입주 전 화면 구성, 디자인 및 제휴서비스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용 46m² 타입의 안방, 거실 분합문 높이는 2,350mm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전용 51m², 59m²A 타입의 거실 분합문 높이는 2,350mm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전용 46m² 타입의 침실2 창호 높이는 1,050mm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전용 51m² 타입의 다용도실 창호 상부에 전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 창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자재별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마감자재 등을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하자 및 임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공상 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세대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외부 창호,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의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가구길이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 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탑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후 개별 창호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ex: 우수 침투 등)는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 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 납부계좌와 유상옵션금 납부계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별도의 히향식 피난구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은 고천초등학교 이전신설을 통해 배치가 가능하며, 중학생은 의왕중학교, 고등학생은 안양권학군에 배치 가능합니다.
- 고천초등학교 이전 신설 완료 전까지 해당 통학구역 내 임시배치대상 초등학생은 기존 고천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 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 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바닥 배수구, 온도조절기, 천장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수량,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밸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어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니트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흥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수량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수량,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으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기구배치,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밸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 TV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항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46m², 59m²A, 84m²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VR자료와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사항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의 계약부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30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경비실2개소, 맘스테이션2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집1개소, 주민공동시설(로비,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중앙광장1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3개소(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의 표기 방법 중,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구분 | 내진능력(MIMI 등급) |
|--------------|---------------|
|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 VII - 0.204g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0M 이상 | 지하 1층 2.7m, 지하 2~3층 2.3m (주차 구역은 최소 2.1m 이상) | 최고 2.7m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사명 | (주)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 | 덕원기술단 | (주)건일엠이씨 | 경기엔지니어링(주) |
| 감리금액 | 8,964,299,300 | 1,459,871,035 | 1,165,780,000 | 499,62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지역열원(지역난방) 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윤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금탕 · 금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금탕 및 금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변압기 및 전동기는 지경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내 설치 |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내 사용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적용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서 번호 | 보 증 금 액 | 보 증 기 간 |
|------------------------------|------------------|--|
| 제 01212025 - 101 - 0005600 호 | 501,116,7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사업관계자 및 시공업체 현황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 상호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135271 - 0001566 | 110111 - 0038805 | 110111 - 6740008 |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10, 301호(왕곡동, 덕우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수송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

■ 견본주택 안내

| | | | | | | | |
|--|---------|---|---------------|---------------|---------------|---------------|---------------------------|
|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5-1번지 | | | | | |
| | 운영기간 | 2025년 11월 21일부터 ~ 분양완료시까지 | | | | | |
| | 운영시간 | 10:00 ~ 18:00 | | | | | |
| | 분양문의 | ☎ 031 – 427 - 1912 | | | | | |
| | 주요일정 | 특별공급 | 1순위 해당 | 1순위 기타 |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기간 |
| | | '25.12.01.(월) | '25.12.02.(화) | '25.12.03.(수) | '25.12.04.(목) | '25.12.10.(수) | '25.12.13.(토) ~ 12.20.(토) |
| | 공식 홈페이지 | https://uw.skview.co.kr | | | | |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